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9. 8 선고 2023가단510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8. 11.

판 결 선 고 2023. 9. 8.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22. 11.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약정을 12,777,0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777,0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변경 신청서 1항에는 사해행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항 기재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을 구하면서 그 한도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포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E 주식회사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874822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5. 19. “D은 E 주식회사에게 7,763,934원 및 그중 6,364,166원에 대하여 2019.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22. 9. 29.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2022. 10. 18. F로부터 채권양도양수통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피고와 D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등

D의 아버지 G는 2022. 10. 17.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H, I, J, D, K가 G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상속분: 각 1/6)

G의 상속인들은 2022. 11. 2.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분할약정에 따라 피고는 2022.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최고액 5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 11. 3. 말소되었다.

다. D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에서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과 수익자의 악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1/6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분할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D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분할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D의 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별지 목록 3항 기재 주택의 신축자금을 부담하였고 아버지 G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G의 치료비를 부담하였던 사정을 상속인들이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분할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을 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1008조의2 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 207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2에서 7호증만으로는 G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있어 D 또는 피고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이 이 사건 분할약정과 같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분할약정 체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분할약정 체결 후 2022. 11. 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와 같이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그 금액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상속분 가액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70,029,200원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7,983,38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재산가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70,029,200원에서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37,983,388원을 공제한 132,045,812원 중 D의 상속분(1/6 지분)에 해당하는 22,007,635원(=132,045,812원×1/6,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갑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은 12,777,048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두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원고의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분할약정은 12,777,0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2,777,0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유재현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순천시 / 대 / 124㎡

2. 전라남도 순천시 / 대 / 31㎡

3. 전라남도 순천시 건물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2.44㎡

2층 82.44㎡

부속건물 조적조 슬래브지붕 1층

화장실 1.2㎡

